

# 서울가정법원

## 결정

사건

이행명령

신청인

[Redacted]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지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세상 담당변호사 김재련

피신청인

[Redacted]

사건본인

1. [Redacted]
2. [Redacted]

사건본인들 주소

[Redacted]

## 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서울가정법원 [Redacted]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사건의 확정심판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 이 사건 이행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건본인들을 인도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 이 유

피신청인은 서울가정법원 [REDACTED]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사건의 확정심판에 따라 사건본인들을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본인들을 인도하지 않고 있으므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1. 31.

판사 김봉남



주의 :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명령에 위반하는 때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금전의 정기적 지급의무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으며,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과태료의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본입니다.

2024. 1. 31.

서울가정법원

법원주사 조민정

